제1773호

2020. 8. 20.(목)

발 행 인 : 영 등 포 구 청 장
편 집 인 : 홍 보 미 디 어 과 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3
전 화 : 02-2670-7561

영등포구보

입법예고

· 제2020-1389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
· 제2020-1390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13

고 시

· 제2020-160호 도로명주소 부여, 폐지 고시 ····· 18

공 고

· 제2020-1372호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 공고 ····· 20

※ 구보게재를 의뢰한 각 부서에 알려드립니다.
구보의 게재내용은 영등포구홈페이지<http://www.ydp.go.kr(영등포소식→새소식→영등포구보)>에 게재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보게재의뢰 및 편집문의 (☎ 02-2670-7561 / 전송: 02-2670-3581)
◎ 구보발행일은 매주 목요일 (공휴일인 경우 익일 발행, 공포 등 필요시 발행일 조정 가능)
◎ 구보게재접수는 D-3일(월요일)까지 접수

D-3접수	→	D-2일 편집 및 교정	→	D-1일 인쇄 및 제책	→	D일 보급 및 배포

영등포구

영등포구 발간등록번호
3180244-0075-2020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고 제2020-1389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8월 20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객관성·전문성을 강화하고 용역사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조례명 개정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학술용역 관리 조례」
나. 학술용역 정의 명확화 : 안 제2조
다. 학술용역심의회의 주요 심의기능 확대 : 안 제3조
라. 용역과제 심의금액에 관한 규정 : 안 제4조
마. 외부위원 참여 확대에 관한 규정 : 안 제5조
사. 용역 실명제 도입에 관한 규정 : 안 제12조
아. 평가위원에 외부전문가 도입에 관한 규정 : 안 제13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참조: 기획예산과장,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3 전화: 2670-7524, 팩스: 2670-357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한 의견사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학술용역 관리 조례”로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학술용역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가 시행하는 학술용역사무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하여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고 학술용역사무를 종합적·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술용역”(이하 “용역”이라 한다)이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으로서 학술·연구·조사·검사·평가·개발 등 지적활동을 통하여 정책이나 시책의 자문에 제공되는 용역을 말한다.
2. “총괄부서”란 예산편성 담당부서를 말한다.
3. “주관부서”란 용역사업을 시행하는 담당관·과(보건소 포함)로서 용역결과 보고서를 활용할 부서를 말한다.

제3조(학술용역심의위원회 설치)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술용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학술용역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심사에 관한 사항
2. 용역과제 선정 및 과업지시서 사전심사에 관한 사항
3. 용역의 사업계획, 수행기간, 용역비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4. 용역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5. 용역결과의 활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심의대상) 이 조례는 구가 시행하는 모든 학술용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술용역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
2. 국·시비 보조사업
3.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용역

4. 기술·전산·임상연구, 단순 반복적인 설문조사 등의 용역
5. 그 밖에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의 복구, 법정 전염병 방제 등 긴급한 정책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용역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이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이 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안전교통국장, 도시국장, 행정지원국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 2명

나. 대학교 또는 연구소 등에 교수(조교수 이상)나 연구원으로 재직 중에 있는 자

다. 그 밖에 해당 용역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제3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어느 한 성(性)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총괄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예산팀장이 된다.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 또는 구의회 의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③ 해촉된 위원이 위촉직 위원인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심의 대상 용역과 관련하여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2. 본인 또는 본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그 사람이 속한 기관·단체에서 용역을 수행할 경우
3. 최근 3년 이내에 심의 대상 용역과 관련된 단체 또는 연구소에 재직한 경우

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특정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7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심의안건 제출) ①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은 주관부서에서 작성하여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안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용역 목적 및 필요성
2. 용역내용, 용역기간 및 수행방법
3. 용역비 산출내역, 계약방식과 그 이유
4. 기존 용역과의 유사·중복성
5. 결과물의 활용방안과 기대효과

제12조(용역실명제) ① 용역을 추진하는 공무원은 실명을 명시하여 용역에 대한 책임을 갖고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한다.

② 제1항의 용역실명대상 공무원은 주관 부서장, 담당팀장, 담당주무관으로 한다.

③ 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주관 부서장을 과제담당관으로 지정하고 다음 사항을 맡아 처리한다.

1. 용역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용역 진행상황의 점검 및 용역결과의 평가
3. 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
4. 그 밖에 용역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3조(용역결과 평가) ① 주관 부서장은 용역의 결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위원회 위원 중 외부 전문가 1명을 평가전문위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위원을 평가전문위원으로 지정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주관 부서장은 용역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용역 결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제14조(용역결과 관리) 주관 부서장은 용역결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용역결과를 총괄 부서장에게 제출하고, 총괄 부서장은 용역결과가 시책 개발 및 사업시행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용역결과의 공개) ① 주관 부서장은 용역이 종료된 후 용역결과를「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54조제2항에 따라 정책연구관리시스템과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그 내용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6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회의결과 보고) ①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결과를 회의록에 정리하여 보고하고, 주관부서에 회의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에서는 통보 받은 회의결과의 내용을 이행하고, 이행결과를 위원장 또는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비밀누설금지) 용역과제심의 업무에 관여한 위원 및 그 밖에 종사자는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은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전에 추진 중이거나 예산에 기 편성된 용역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른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위원 위촉에 관한 경과규정)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② 제6조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위촉 또는 연임된 날부터 기산하여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가 시행하는 용역사무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하여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고 지방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가 시행하는 학술용역사무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하여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고 학술용역사무를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삭 제)
2. “학술용역”이란 행정업무 또는 제도의 개발·개선 등에 관한 연구용역과 학술적인 조사·연구 사업을 위한 용역을 말한다.	1. “학술용역”이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으로서 학술·연구·조사·검사·평가·개발 등 지적 활동을 통하여 정책이나 시책의 자문에 제공되는 용역을 말한다.
<신 설>	2. “총괄부서”란 예산편성 담당부서를 말한다.
3. “주관부서”라 함은 용역사업을 시행하는 담당관·과(보건소 포함)로서 용역결과보고서(성과품)를 활용할 주된 부서를 말한다.	3. “주관부서”란 용역사업을 시행하는 담당관·과(보건소 포함)로서 용역결과 보고서를 활용할 부서를 말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3조(학술용역심의위원회 설치)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술용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학술용역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신 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현 행	개 정 안
1.~2.(생 략)	1.~2.(현행과 같음)
3. 용역관련 예산 적정성 여부	3. 용역의 사업계획, 과업내용, 수행기간, 용역비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4. 용역관련 사전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4. 용역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신 설>	5. 용역결과의 활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사항
5. (생 략)	6. (현행 제5호와 같음)
제4조(심의대상) ① 위원회의 심의대상은 건당 4천만원 이상의 용역사업으로 한다. 다만, 학술용역은 건당 3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제4조(심의대상) 이 조례는 구가 시행하는 모든 학술용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술용역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심의대상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삭 제)
1. 재해복구 등 긴급을 요하는 사업	1. 다른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
2. 다른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	2. 국·시비 보조사업
3.「지방재정법」제37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사업	3.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용역
4. 국·시비 보조사업	4. 기술·전산·임상연구, 단순 반복적인 설문조사 등의 용역
<신 설>	5. 그 밖에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의 복구, 법정 전염병 방제 등 긴급한 정책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용역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

현 행	개 정 안
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하되, 위촉직 위원이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1. 구청의 국·소장	1. 당연직 위원: 안전교통국장, 도시국장, 행정지원국장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 2명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신 설>	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 2명
<신 설>	나. 대학교 또는 연구소 등에 교수(조교수 이상)나 연구원으로 재직 중에 있는 자
<신 설>	다. 그 밖에 해당 용역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예산 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예산총괄 담당주사가 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총괄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예산팀장이 된다.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촉직 위원이 중도사퇴, 품위손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③ (삭 제)

현 행	개 정 안
아니한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④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③ 해촉된 위원이 위촉직 위원인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의2 ①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생 략)	제7조 ①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현행과 같음)
1. 심의대상 용역과 관련하여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1. 심의 대상 용역과 관련하여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8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7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② (생 략)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② (현행과 같음)
제8조(회의) ①~② (생 략)	제10조(회의)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현 행	개 정 안
④ 회의는 용역사업데 대하여 충분한 심의가 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④ (삭 제)
제9조(심의요청 등) ① 용역을 시행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용역과제심의요청서에 사업명, 사업목적, 사업의 필요성, 사업내용, 용역방법 및 용역기관 등 당해 안건의 심의에 필요한 제반 내용 등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회의개최 10일전까지 간사에게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11조(심의안건 제출) ①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은 주관부서에서 작성하여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의요청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안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 설>	1. 용역 목적 및 필요성
<신 설>	2. 용역내용, 용역기간 및 수행방법
<신 설>	3. 용역비 산출내역, 계약방식과 그 이유
<신 설>	4. 기존 용역과의 유사·중복성
<신 설>	5. 결과물의 활용방안과 기대효과
<신 설>	제12조(용역실명제) ① 용역을 추진하는 공무원은 실명을 명시하여 용역에 대한 책임을 갖고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한다.
<신 설>	② 제1항의 용역실명대상 공무원은 주관 부서장, 담당팀장, 담당주무관으로 한다.
<신 설>	③ 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주관 부서장을 과제담당관으로 지정하고 다음 사항을 맡아 처리한다.
<신 설>	1. 용역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
<신 설>	2. 용역 진행상황의 점검 및 용역결과

현 행	개 정 안
	의 평가
<신 설>	3. 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
<신 설>	4. 그 밖에 용역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신 설>	제13조(용역결과 평가) ① 주관 부서장은 용역의 결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위원회 위원 중 외부 전문가 1명을 평가전문위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위원을 평가전문위원으로 지정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신 설>	② 주관 부서장은 용역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용역 결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제10조(용역결과 관리) 주관부서 장은 용역결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용역성과품을 예산편성총괄담당부서장에게 제출하고, 예산 담당 부서장은 용역성과품이 시책개발 및 사업시행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용역결과 관리) 주관 부서장은 용역결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용역결과를 총괄 부서장에게 제출하고, 총괄 부서장은 용역결과가 시책개발 및 사업시행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의2(용역결과의 공개) 주관부서장은 용역이 종료된 후 용역결과를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4조제2항에 따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그 내용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5조(용역결과의 공개) 주관 부서장은 용역이 종료된 후 용역결과를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4조제2항에 따라 정책연구관리시스템과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그 내용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1조(의견청취 등) (생 략)	제16조(의견청취 등)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12조(회의결과 보고) ①~② (생 략)	제17조(회의결과 보고) ①~② (현행과 같음)
제13조(비밀누설금지) (생 략)	제18조(비밀누설금지) (현행과 같음)
제14조(수당 등) (생 략)	제19조(수당 등) (현행과 같음)
제15조(시행규칙) (생 략)	제20조(시행규칙)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고 제2020-1390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8월 20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객관성·전문성을 강화하고 용역사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관련 시행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제명 개정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학술용역 관리 조례 시행규칙」
나. 용역 결과 평가 및 활용 규정 개정 : 안 제7조
다. 용역활용 현황 서식 신설 : 안 제7조

3. 의견 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참조: 기획예산과장,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3 전화: 2670-7524, 팩스: 2670-357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한 의견사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규칙 제 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학술용역 관리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학술용역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조 중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학술용역 관리 조례」”로 한다.

제3조제1항제2호 중 “투·융자”를 “투자”로, “등”을 “등과의 연계성”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용역평가분석보고서,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용역관리카드를”을 “3개월 이내에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용역성과품을”을 “용역사업평가분석보고서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주관 부서장은 용역 완료 후 6개월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용역 활용 현황을 예산편성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7호서식]

용역활용현황(제7조 관련)

용 역 명		수행기관/ 책임연구원	
용역기간		용역비	천원
연구목적			
연구주요내용			
활용목적			
활용내용			
기대효과			
문제점 및 대책			

용역실명제	부서명	부서장	담당	담당자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학술용역 관리 조례」 ----------.
제3조(용역과제의 선정 및 예산신청) ① 용역을 시행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이하 “주관 부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용역과제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3조(용역과제의 선정 및 예산신청)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융자 심사 및 도시개발 기본계획 등	2. ---------- 투자 ---------- ---------- 등과의 연계성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평가 및 활용) ① 주관 부서장은 용역완료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용역평가분석보고서,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용역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예산편성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평가 및 활용) ① ---------- 3개월 이내에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을 ----------.
② 예산편성 부서장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용역성과 활용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고 제1항에 의하여 제출된 용역성과품을 열람 가능할 수 있게 관리하여야 한다.	② ---------- 용역사업평가분석 보고서를 ----------.

<신 설>	③ 주관 부서장은 용역 완료 후 6개월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용역 활용 현황을 예산편성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별지 제7호서식〕

용역활용현황(제7조 관련)

용 역 명		수행기관/ 책임연구원		
용역기간		용역비		천원
연구목적				
연구주요내용				
활용목적				
활용내용				
기대효과				
문제점 및 대책				
용역실명제	부서명	부서장	담당	담당자

고 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시 제2020-160호

도로명주소 부여, 폐지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제24조, 제25조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 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8월 20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 도로명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신로 228-5 (신길동) 외 4건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등포구청 부동산정보과(☎2670-3724)에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 도로명주소 부여 조서

고시일 : 2020.8.20.

연번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비고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4348-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13길 10-1 (신길동)	2020-08-20	2010-05-27	여의대방로에서 분기되는 도로로 해당 일련번호 활용	신규 부여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5가 6-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43길 3-1 (영등포동5가)	2020-08-20	2010-05-27	영등포로에서 분기되는 도로로 해당 일련번호 활용	신규 부여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동3가 15-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신로25길 3 (문래동3가)	2020-08-20	2010-05-27	영신로에서 분기되는 도로로 해당 일련번호 활용	신규 부여

■ 도로명주소 폐지 조서

폐지고시일 : 2020.8.20.

연번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고시일	비고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신로 228-5 (신길동)	2020-08-18	2020-08-20	대장 말소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23길 4 (양평동1가)	2020-08-18	2020-08-20	대장 말소

공 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고 제2020-1372호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 공고

주차장법 제19조의7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6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계식 주차장치의 안전도인증서를 발급하고,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6 제4항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20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 내용

연번	인증번호	상 호 (대표자)	명 칭	종류 및 방식	발급일
1	서울영등포 제8-1-16호 (2020년)	㈜신우 유비코스 김문재	SWCT-F1L1C-2H-SA44-LITT	평면왕복식 2단 운반식(종식,방향전환장치내장형(90도)) 44대형 【수용차량: 중량 1850kg, 길이 5.05m, 높이 1.55m, 폭 1.9m 이하】	2020. 07.31.
2	서울영등포 제6-1-18호 (2020년)	㈜신우 유비코스 김문재	SWV2S-SA74LITT-HTM-OC(74대형,90도)	승강기식 횡식 하부승입식(방향전환장치내장형(90도)) 74대형 【수용차량: 중량 1850kg, 길이 5.05m, 높이 1.55m, 폭 1.9m 이하】	2020. 08.11.
3	서울영등포 제6-1-19호 (2020년)	㈜신우 유비코스 김문재	SWV2S-SA76PITD-HTM-OC(76대형,180도ITD)	승강기식 횡식 하부승입식(방향전환장치내장형(180도)) 76대형 【수용차량: 중량 1850kg, 길이 5.05m, 높이 1.55m, 폭 1.9m 이하】	2020. 08.11.

○ 문의: 영등포구청 주차문화과 ☎02-2670-4286